



2020년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목 차

I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08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09

II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12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13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14

Ⅲ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6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18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65

Ⅳ

부 록

1.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4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5
-

발간사

파주시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3월 18일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구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민간인의 신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민원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옴부즈만들은 지난 한 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신청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신청민원에 대한 조사와 판단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위원회에서 처리했던 고충민원에 대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신청인들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파주시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통을 겪으셨던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권역별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은 문산행복센터에서 실시한 1회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각 읍면동 리·통장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를 홍보한 것은 그나마 홍보성과라면 성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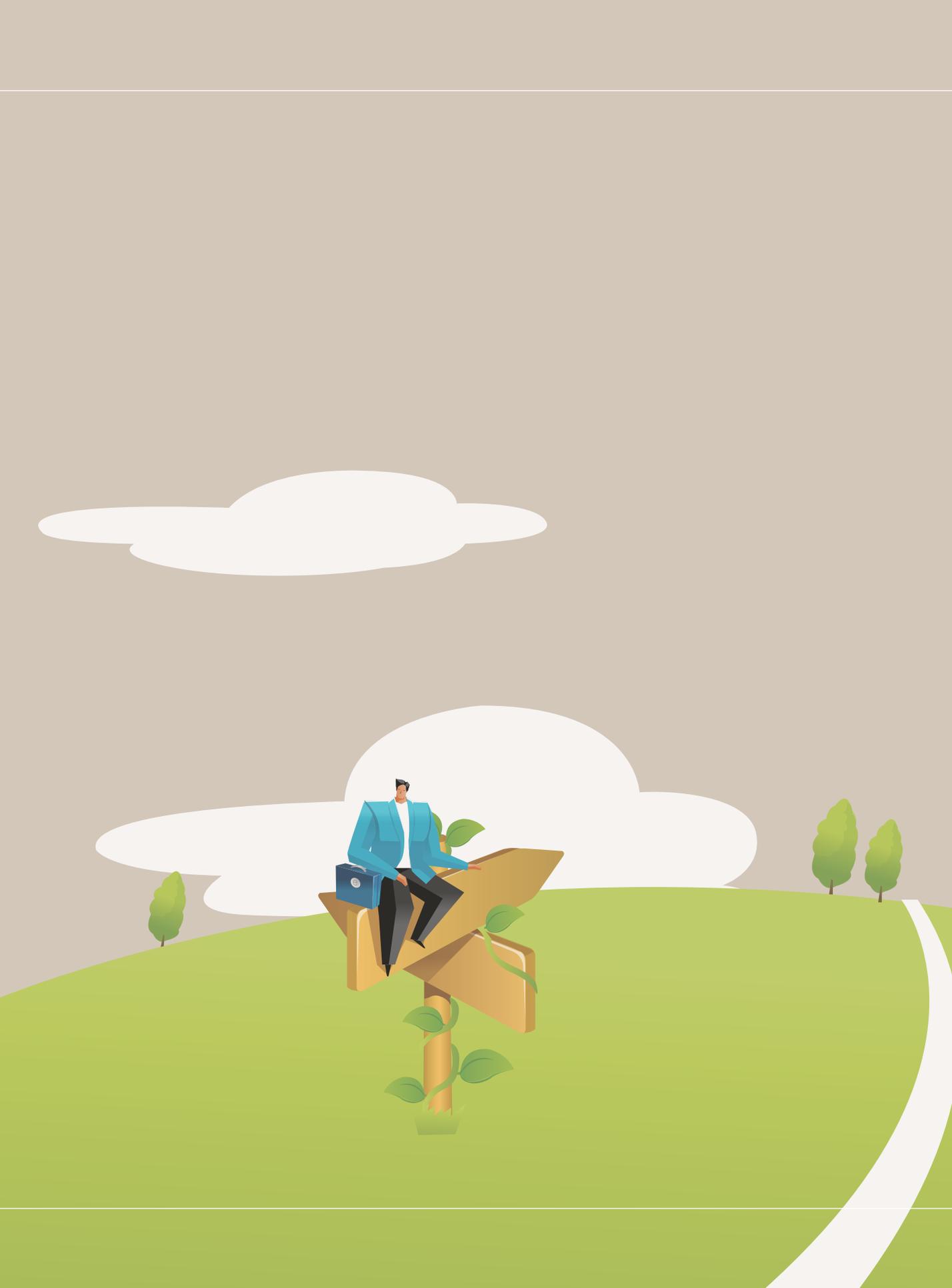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했던 민원들을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지난해 보다 더 충실하게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2021년에는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직접 조사 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파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0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결과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2020년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1년 3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일동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Ом부즈만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가. Ом부즈만 제도 도입배경

- Ом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채택된 이래 주로 북유럽에서 발전해온 제도로,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행정의 권한이 확대되고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Ом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파주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8년 Ом부즈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Ом부즈만을 위촉하여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파주시 Ом부즈만 제도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Ом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Ом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2018. 2. 28. 파주시 Ом부즈만 설치 기본방안 수립
- 2018. 4. 20. 「파주시 Ом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8. 10. 11. 파주시 Ом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18. 10. 22. Ом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Ом부즈만팀 신설)

- 2019. 3. 8.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9. 3. 18. 옴부즈만 위촉(3명)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개시
- 2019. 5. 10.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020. 3. 24. 2019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가. 구성개요

- 신 분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4년(연임 불가)
- 근무형태 : 비상근(주 20시간) 합의제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나. 구성현황

연번	직위	성명	사진	위촉일	주요경력
1	위원장	임우영		2019.3.18.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 국회의장 비서관 前)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위원	조복록		2019.9.18	前) 경기도의회 의원 前) 푸른파주21 상임대표
3	위원	박완재		2020.9.16	前) 파주시 경제국장

다. 파주시 옴부즈만의 기능

- 직무관할 기관
 - 파주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파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직무 범위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II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

※ 고충민원 제외 대상 (이첩·각하)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소속행정기관 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 E-mail : pajuminwon@korea.kr / 팩스 : 031) 940-4089
- 신청서식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비치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 www.paju.go.kr : 파주시청 홈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우측 상단 배너 > 위원회 소개 및 민원 신청 (문의전화 : 031) 940-4464~4466)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Paju City homepage with the '민원' (Petition) menu highlighted. The '시민고충처리위원회' (Citizen Grievance Processing Committee) link is highlighted in a red box. The menu items include: 총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온라인 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여권민원, 차량종합민원, 민원신고센터, 청원신고센터. The '시민고충처리위원회' link is highlighted in a red box.

The screenshot shows the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Committee Introduction and Petition Application) page. The page content is summarized below: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역을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중부조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중부조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읍무조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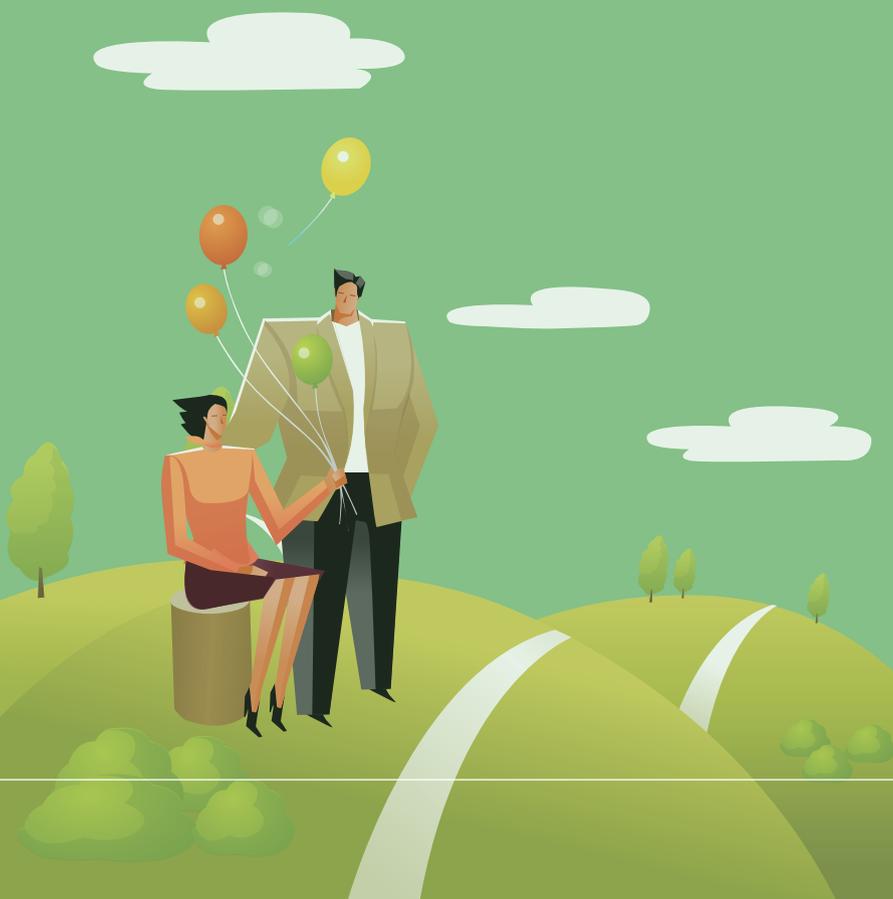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적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파주시 ombudsman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	합계	위원회 직접조사									미조사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권고	심의 해소	기각	각하	취하	이첩	각하
'19	60	28	1	9	(2)	1	3	8	5	1	31	1
'20	98	35	-	22	1	-	2	7	2	1	50	13
계	158	63	1	31	1	1	5	15	7	2	81	14

나. 민원분야

년도	합계	일반 행정	세무 행정	보건 복지	환경 녹지	건설 교통	도시 건축	문화 관광	농림 산림	기타
'19	60	7	-	4	8	18	15	1	6	1
'20	98	15	4	5	11	22	28	2	5	6
계	158	22	4	9	19	40	43	3	11	7

다.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년도	합계				의견표명				시정권고	합의권고 및 제도개선
	계	수용	불수용	진행중	소계	수용	불수용	진행중	수용	수용
'19	11	10	1	-	9	8	1	-	1	1
'20	23	19	1	3	22	18	1	3	-	1
계	34	29	2	3	31	26	2	3	1	2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조사여부	내 용
시정권고	여	피신청인의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변경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여	피신청인의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제도개선	여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여, 부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등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의종결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이첩	부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취하	여, 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원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가. 의견표명

의견
표명

성장관리지역 내 계획도로를 인접 부지와
공동(각50%)으로 재지정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 민원내용

- ▶ 성장관리방안수립 결정 고시에 따라 신청인의 부친 소유 토지 가운데로 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잔여 토지가 발생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지정된 계획도로가 부친 소유의 토지에만 설정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므로 계획도로의 중심선을 필지의 경계로 조정하여 인접 부지와 각각 50%씩 편입되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동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배치, 건축물의 용도 등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2016.10.7. 성장관리방안수립 결정 고시하였음.
- ▶ 성장관리방안수립 고시된 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의 민원 토지 주변은 개발행위(건축)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어 계획도로와는 별개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개별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야당~상지석간 연결도로의 개통(2019.12월)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 그러나, 계획도로의 폐지 또는 계획도로를 인접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50%씩 편입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계획도로를 반영한 개발행위가 이미 완료되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변경 절차 이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으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이에, 계획도로의 선형 변경을 통해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인의 토지 내에 지정된 계획도로를 이 계획도로와 연결되는 기존 도로의 중심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 토지 경계와 접해 개설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청인의 토지 경계로 계획도로 선형을 조정
- '20. 5.13. 성장관리방안(도로계획선) 변경 결정 고시

사유지에 구거와 도로 불법 점유로 인한 재산권 침해

◆ 피신청인 :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

◆ 민원내용

- ▶ 신청인 자녀 소유 토지에 오랜 기간 동안 구거, 하수관로 및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거 상부에는 컨테이너가 불법 설치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손해를 주고 있으니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우선적으로 향후 토지 활용도, 안전사고 방지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구거를 복개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현장 확인 후 '20. 4. 8. 신청 지역의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구거 상부에 불법 점용시설(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있고 구거와의 경계에 담장이 축조되어 담장 바깥쪽을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이 불가함.
- ▶ 다만, 측량을 통해 대략적으로 구거 약 〇㎡, 하수관로 및 도로의 일부가 민원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민원 토지 또한 담장의 설치를 통해 구거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은 불법 점용시설 등으로 인해 대략적인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이 측량 결과를 근거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 이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거 상부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원상복구 이후 구거 복개 등 요구 사항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조치 중)

주거급여 소급분에 대한 지급 요청

◆ 피신청인 : 파주시장(주택과, 복지지원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2019.1월 파주시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주거급여 신청자와 임대차 계약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사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음. 이후 2019.10월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한 결과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최초 신청시 피신청인의 잘못된 안내 및 업무처리로 인해 받지 못한 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과 신청인의 명의를 다르다는 사유로 지급 불가 통보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과거 금융회사 채무로 인한 주택 보증금의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질적 임차인이 본인임을 설명하였음에도 인정되지 않음.
- ▶ 또한,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인정됨.(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
- ▶ 그러나,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자의 친인척, 제3자가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 임차료는 수급자가 납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갈음하는 증빙서류(계좌 입금, 자동이체내역 등)를 제출하면 주거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과 과거 거주지에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과정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아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됨.

- ▶ 신청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에 같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2019.1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 민원의 원인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 이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잘못된 안내 및 업무처리로 인해 미지급된 2019.1월 ~ 9월까지의 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2019.1월 ~ 9월까지의 주거급여 소급 지급 완료(2020.7.3.)

◆ 피신청인 : 파주시장(세정과)

◆ 민원내용

-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등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장남이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첫째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납세의무자를 장남으로 변경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상속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첫째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여 장남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이때,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것은 없다고 판단됨.
- ▶ 그러나, 부친의 유언장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 신청인은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상속인들간 상속등기 이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장남이 모두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장남이 모두 납부하였음.
- ▶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 ▶ 이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절성 여부 및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이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납세의무자 변동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재산소유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현재 상속등기 미이행 상속재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직권 고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직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부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처리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산지전용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고 허가기간 종료일 이전의 기간도 황금연휴로 인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 접수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2018.5.4. ~ 2020.5.3.로 허가기간 종료일은 휴일(일요일)이며, 종료일 이전에도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 날,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므로 종료일 익일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5.4.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산지전용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청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 그러나,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을 종료일로 하여 신청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 이에, 신청인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인 허가기간의 종료일을 익일로 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수리(2020.6.24)

화재로 재건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청

◆ 피신청인 : 파주시장(납세지원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주)0000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접한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로 인해 전소된 본인의 창고를 재건축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이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아닌 인접공장의 원인모를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의 멸실로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의 복구를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 대항하여 진압할 수 없었던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되어 이를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임
- ▶ 또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미확인 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됨.
- ▶ 다만, 조세관련 법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와 타 공장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재현장에 대한 경찰 등의 조사보고서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민원의 건축물은 불가항력으로 전소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처리 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불수용

-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경기도 질의회신 결과 대체취득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는 사유 중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 즉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그 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화재의 발생(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체취득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추모공원 옆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에 따른 대책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광탄면, 환경보전과)

◆ 민원내용

- ▶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는 신청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축주와 접촉하여 신청인 측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건축주의 대책은 제시된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대책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모공원에 접한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추모공원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신축되는 민원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공장용도의 토지로서 허가에 위법·부당함은 없다는 판단임.
- ▶ 다만, 신청인이 제기한 해당 토지의 옹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설치된 것은 신청인이 본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접수하기 이전에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이후 처리가 완료되었음.
- ▶ 또한, 신청인이 우려하는 배수처리 시설, 대기오염방지, 악취제거, 조망권, 일조권 등에 대해서 건축주는 추모공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완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를 가지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향후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완하여 이행하도록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판단임.
- ▶ 특히, 폐기물 처리시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과 악취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환경법 기준에 맞게 오염 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민원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은 없다는 판단임.

-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 중에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신청인과 건축주간의 원만한 해결 뿐 아니라 신축공장의 생산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예정

◆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보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반드시 건축허가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허가받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민원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은 민원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건축의제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하면 법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해 달라는 내용임.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의 어느 규정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부수적으로 건축허가를 의제로 처리하여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 반면에, 피신청인 또한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의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것은 없다고 판단됨.
- ▶ 더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단독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민원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6호(2010.5.27.)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

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건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축물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공문의 내용과 같이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향후 개발행위허가 단독 접수 시 민원인들의 편의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제출 받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배수로 및 집수정의 원상복구 요청

◆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설과, 광탄면)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통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 *** 개수공사 시 신청인의 토지 진입로를 만들면서 000과 신청인은 각 소유 토지의 1/2씩 배수로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시유지에 우수받이형 집수정과 매립형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연결하였음
- ▶ 그러나, 000는 *** 개수공사가 완료된 2018년에 000의 모친 ### 소유의 토지를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면서 배수호가 없어지고, 시유지에 위치한 집수정을 흙으로 매립하여 배수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과 000 사이의 토지 경계문제, 배수로의 존재여부와 설치문제 등에 대한 판단은 사인간의 권리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안임
- ▶ 다만,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펴본 바, 성토한 ###의 토지와 주변 농지의 높이, 성토한 토사 등에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신청인(광탄면)이 신청인의 인접 토지의 성토로 인해 제기한 피해발생 민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을 위반한 것이 없어 이를 종결한다는 판단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 하지만, 배수를 위해 *** 개수공사 당시 집수정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는 시유지에 대해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며, 피신청인(건설과)은 이 필지에 대한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을 해소할 것과 집수정이 설치목적에 이용되도록 민원 발생 집수정의 주변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조치중)

◆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설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운정-능안간(시도5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신청인의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서 해제하고 반대편의 농지를 편입 시켜 줄 것과 보상계획 공고 시 신청인이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판단 및 결론

- ▶ 위 공사에 대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제1차 공고 시에는 개별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열람기간을 지나 배달되었고, 제2차 공고 시에는 개별통보 없이 시청홈페이지와 일간지에만 게재하여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임.
- ▶ 물론 피신청인 역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법률이 규정한 14일 동안 열람할 기회를 주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 다만, 피신청인이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행정행위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고
- ▶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정행위는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음.
- ▶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의 보상협의를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받아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이의신청서 접수 및 회신완료

◆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도로 폭 규정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허가한 명확한 답변과 허가부지에 불법 축조된 옹벽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수허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본 민원의 허가 사항 등을 검토한 바 피신청인의 허가에 위법·부당함은 없다는 판단임. 그러나 허가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 폭에 대해서는 신청인 등의 주장이 이유 있다할 것임. 개발토지에 이르는 도로의 상당 부분은 사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득해야 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폭(4m)을 겨우 충족할 수 있는 협소한 도로로,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합의되지 못할 경우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허가의 조건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수허가자에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판단임.
- ▶ 본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기간에 00동 000번지 토지주와 수허가자 간에 도로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합의가 성사됨으로써 법적 허가기준은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음. 다만, 00동 000번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토지주와 임차인 간에 해결할 사인간의 권리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적격이 없다 할 것임.
- ▶ 불법 축조된 옹벽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수허가자에게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하였고, 수허가자가 원상복구 명령기한 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함께 수허가자를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 예의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1조(벌칙)에 따라 고발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임.

▶ 따라서, 진입도로의 폭과 관련한 민원은 사인 간에 합의할 사항으로 각하하고, 불법축조한 옹벽 등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등에 머물지 말고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당초 허가내용 대로 준공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조치중)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한 옹벽 철거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00동 000-0번지에 불법 시공된 옹벽을 철거해 줄 것과 같은 동 ****-번지와 ###번지에 걸쳐 있는 옹벽이 신청인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명의로 공작물 축조신고 되어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 등의 동의 없이 타 목적으로 동의했던 서류 등을 사용하여 공작물축조 신고에 따라 축조된 옹벽은 신고 명목이 신청인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철거에 대한 판단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인 등이 결정할 사항이며, 거짓으로 신고 관련서류를 받아서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함.
- ▶ 불법 옹벽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행위자에게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거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를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1조(벌칙)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됨.
- ▶ 따라서, 00동 000-0번지에 불법으로 시공한 옹벽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건축법」과 「산지관리법」에 의거 원상복구 이행명령 및 고발 등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정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다만, 개발행위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처리중)

◆ 피신청인 : 파주시장(위생과)

◆ 민원내용

- ▶ 00000 생산을 위해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아 정상적인 생산유통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안식향산나트륨이 첨가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과 제품회수 및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품목제조보고 후 비율대로 성실히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책임이 없으며 공무원의 업무미숙 및 검토 부실로 인한 행정처분의 부당함과 생산제품 회수·폐기 및 소비자의 불신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또한, 영업자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온라인)를 통해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 시스템상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식향산나트륨’ 처럼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 사용조건을 확인 안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1차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임.
- ▶ 그리고,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용이 구체적 인지 상세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검토 대상에는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사용 여부 및 식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여부’등이 있음.
- ▶ 그러므로, 신청인의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하는 피신청인이 식품품목제조보고서의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

를 제대로 검토 못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처리한 피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임.

- ▶ 따라서, 내부조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미 제품회수 폐기에 따른 영업 손실과 이미지 손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모든 제품의 제조가 중지되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첨가된 안식향산 나트륨은 문제가 된 '00000'에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다른 제품에는 이미 첨가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이 아닌 엄중한 경고 등 그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행정처분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 시정조치로 완화하여 처분 완료

희망일자리 참여자의 경조사 무급휴가에 대한 이의제기

◆ 피신청인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로서 모친 사망으로 실시한 5일간의 휴무에 대해 피신청인이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

◆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발된 사업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라 경조사에 따른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위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
- ▶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주시 역시 「파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에 따른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사업이 아닌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업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5일간의 휴무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음.
- ▶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모친의 사망으로 실시한 5일간의 휴무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경조사로 인한 휴가 무급처리 한 부분에 대하여 유급처리로 변경하여 지급 완료.

가로수 이식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 피신청인 : 파주시장(공원녹지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상가 앞 가감속 차로 설치를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또한, 가감속 차로 설치를 위해서 피신청인에게 가로수 이식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가로수 이식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로수 가격만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피신청인이 이를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20.8월 피신청인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조성을 위한 가로수사업(이식)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20.9월 현재 가로수 인 은행나무 1주를 중국단풍나무 23주로 '20.10월말까지 대체 식재할 것과 하자보수금(증권) 890만원 예치, 조경전문업체에 위탁 시공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 ▶ 하지만, 신청인은 상가 앞 은행나무와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낙엽에 따른 배수로 청소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해 왔으며, 가로수 이식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로수 보상가만 시에서 납부 받은 후 사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함.
-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겨울철 이식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체식재를 당초 중국단풍나무 23주에서 이팝나무 21주로 조정하여 '21.4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20.11월 변경승인 하였다.
- ▶ 또한, 피신청인은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같은 조례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가로수 이식사업은 같은 조례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3항에 따라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 일반적으로 원인가가 가로수 이식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시가 시행하는 것보다 원인가가 시행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대부분의 가로수 이식 승인 신청자가 직접 이식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 ▶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식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원인가인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위법 부당함은 없으며, 신청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로수의 수종, 크기, 수량 등을 변경하여 승인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향후 가로수 이식사업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규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향후 가로수 이식사업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관련 조례의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 조치 예정.

분묘 근처 절토된 법면 정비 요청

◆ 피신청인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지역발전과, 건축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의 분묘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법면이 생겼으며, 해당 법면이 절토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분묘의 유실 우려가 있으니 유실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토록 조치 해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민원 현장 확인 결과 신청인 분묘 근처에 공장 신축으로 법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법면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어 신청인의 분묘가 호우 시 유실 우려가 있다는 민원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 비록, 해당 공장이 2020. 4. 7.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및 2020. 5. 21. 공장등록 승인 처리가 되었지만 민원내용이 공장 신축 중에 발생한 사항이기에 피신청인이 건축주에게 분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 건축주 면담 결과 건축주 또한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안전대책을 세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 피신청인은 건축주에게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및 권고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건축주에게 분묘 근처 법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 보수공사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보수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 임.

주택앞 우수관·상수도계량기 복구 및 통행로 개설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조리읍)

◆ 민원내용

- ▶ 피신청인이 00읍 00리 000-00번지 일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강토 옹벽공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우수관이 파손되었고, 거주지 통행로가 없어졌으며, 상수도의 계량기 또한 옹벽 설치로 매립되어 검침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재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상수도계량기 이전설치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치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우수관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사항은 파손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파손한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 그러나,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보강토 옹벽의 일부분에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확보해 줄 것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보강토 옹벽 일부에 통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나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2021. 3월 중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계획임.

◆ 피신청인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 민원내용

- ▶ 피신청인 소속의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 ‘파주20선’ 도시재생아카이빙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2,200부의 책이 제작되었으나, 제작한 책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미 사용한 400부를 제외한 1,800부를 폐기처분하고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발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결정하려고 한다며, 폐기처분은 예산낭비이므로 오류부분만 수정해서 제작된 책을 사용하여야 함을 요청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에 속한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파주20선’ 도시재생 아카이빙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오류 제작된 책의 처리는 피신청인이 그 사용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 오류부분만 수정하여 제작된 책을 재사용 하는 것이 아닌, 소량(300부)을 재인쇄하는 것은 파주시의 이미지와 제작된 책의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 ▶ 다만, 센터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당초 제작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피신청인은 행정직영으로 운영되는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책임 부서로서 그 역할에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오류 제작된 책의 사용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할 것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직원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제작 오류로 사용이 보류된 1,800권의 책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로 배부할 계획이며, 재인쇄하는 책에 대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 임.

◆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설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00리 ***-**-**번지를 경매로 취득한 토지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도로확장 후 남은 파주시 소유의 잔여 건축물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현 토지소유자인 본인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철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이기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임.
- ▶ 이와 별도로 제기한 2차민원에서는 해당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00리 ***-**-**번지 지상에 존재하는 파주시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보다는 예산의 절감과 낭비를 막기 위해 매각을 요구하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현 토지 소유자에게 파주시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인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 지급 문제, 현재 파주시 소유의 건물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자에 대한 퇴거 등의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이러한 선결문제들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조속히 해결한 후 현 토지소유자에게 00리 ***-**-**번지 지상의 파주시 소유 건물을 철거보다는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검토중

DMZ(제3땅굴)평화관광 불편해소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관광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DMZ(제3땅굴)평화관광”을 하고자 임진각 땅굴관광 매표소에 오전 9시 경도착하여 10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 탑승을 위해 표를 구입하려 하자 창구직원이 정원이 이미 채워져 탑승이 어렵다고 하여 다음 출발(10시30분)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렸으나 출발 5분전 인원이 적어서 취소한다고 하였음.
- ▶ 다음 출발시간은 14시라고 하여 결국 땅굴 관광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에, 소수의 인원이라도 관광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줄 것과 인터넷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DMZ평화관광”은 민간인 통제구역 특성상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전용 관광셔틀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버스 배차 등 효율적인 관광 운영을 위하여 최소 인원을 5명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등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현장매표를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지정학적 이유로 관광이 취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 ▶ 그러나 DMZ평화관광 셔틀버스 운영을 관광객 5인을 기준으로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광객의 인원을 5명이상과 이하로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사전에 공지된 DMZ평화관광 셔틀버스 운행횟수와 시간표를 확인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탑승인원이 5인 이하라는 이유로 운영을 취소하는 것은 파주시의 이미지 훼손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됨.

- ▶ 또한 신청인이 제안한 인터넷 예약시스템 개설에 대하여는 DMZ평화관광의 특수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함은 물론 혹여 가능한 사전예약방법 등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내부방침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과 인터넷 사전예약방법 등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처리결과** : 수용

- ▶ DMZ평화관광 재개 시 셔틀버스 운영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등에 대한 대안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련토록 진행할 계획임.

◆ 피신청인 : 파주시장(탄현면, 동물자원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축사증축을 위해 2020. 9. 3. 탄현면에 건축신고를 접수하고 허가를 기다리던 중 탄현면 건축담당자로부터 2020. 12. 21. 건축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허가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오후 탄현면에서 동물자원과에서 건축허가 ‘부동의’ 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재통보를 받았음.
- ▶ 이는 동물자원과 내부협의 과정의 문제로 의견을 누락시킨 것을 이유로 허가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 불허가되는 파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니, 해당 건축신고 불가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해당 건축신고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하며,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가축사육 전 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에 건축신고에 대한 불가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 다만,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 각 부서와의 협의절차에서 동물자원과 축산환경팀 협의 의견이 누락된 부분과 민원처리의 결과를 최종 처리 전 성급하게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혼선을 초래한 선급한 행정 처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신청인의 건축신고 불가처리에 대한 선처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하고, 피신청인은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의결결과 : 의견표명·기각

◆ 처리결과 : 검토중

나. 제도개선

제도
개선

오수 부담금 징수방법 불투명성 개선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환경보전과, 상수도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00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과 별도로 검침·부과되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여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에 전월 검침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건물은 00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다른 주택과는 달리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산업단지 폐수처리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하수도 요금이 아닌 오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과가 아닌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오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구별되며 부과 주체, 가산금 적용 비율, 검침일, 부과 방법에 따른 감면 형태 등이 다르며,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파주시가 아닌 K-water에서 부과·관리하고 있어 오수 부담금을 통합 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변경, 부서간 업무 이관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통합 고지가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그 외 오수 부담금의 징수 방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량 검침 자료 공유, 자동이체 도입, 전월 지침 기재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현재의 관행을 조금만 바꾸려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이에, 피신청인간 업무 협조를 통해 ① 상수도 검침 자료를 공유(1회 실시) ② 오수 부담금 고지서의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조치 ③ 고지서에 상수도 사용량의 전월 지침을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함.

◆ **의결결과** : 제도개선권고

◆ **처리결과** : 수용

- ▶ 상수도 중복 검침을 1회 실시로 개선 및 고지서에 전월 지침 기재
- ▶ 자동이체 신청 시스템 개선 완료

다. 심의종결(해소)

심의종결
(해소)

농경지 피해발생 방지 대책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 파주시장(파주읍)

◆ 민원내용

- ▶ 매년 우기 시 신청인 소유의 농경지 옆에 설치된 U형 배수로의 월류로 인해 유송 잡물과 토사가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 피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서로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3년째 방치하고 있으니 이를 조속히 정리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농지 주변에 설치된 U형 배수로는 '17년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파주읍에서 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였음.
- ▶ 피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현장 확인한 결과, U형 배수로 말단에 배수로와 용수로가 교차됨에 따라 배수호가 수중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호우 시 배수되지 못하고 넘치는 것으로 판단됨.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중관으로 설치된 배수로를 U형 배수로로 교체하고 용수로를 수중관으로 설치하여 배수 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나, 용수로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예산이 없어 피신청인이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 요구 시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음.
- ▶ 이에, 피신청인과 다시 현장 확인 및 협의한 결과, '17년 배수로 설치와 같이 농축산과의 영농환경개선 잔여 사업비를 파주읍으로 재배정하여 배수로 및 용수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농작물 수확 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민원이 해결되어 “심의종결(해소)”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해소)

◆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공장신설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허가 당시의 배수 흐름도와 불일치하니 배수처리 계획을 재수립하여 조치할 것을 보완 통보 함. 이에 신청인은 허가 사항대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배수 흐름의 불일치는 인근 토지주가 임의로 공사하여 배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 당시 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배수 흐름상의 불일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배수 흐름 변경에 대한 조치를 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재수립을 기 통보하였으며, 배수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채 준공신청이 접수되어 배수계획 재수립을 통하여 피해발생 방지 조치를 실시할 것을 보완 요청한 피신청인의 행정행위 또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 결과, 인근 토지의 사용승락을 득하여 배수처리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이 민원 신청의 원인이 해결되어 “심의종결(해소)”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해소)

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주택과)

◆ 민원내용

- ▶ 「건축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으로 건축된 000000가 노인복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입주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거주하는 000000는 「건축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허가 받고 건축되어 개인에게 분양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어 17년 동안 공동주택도 아니고 노인복지주택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음.
- ▶ 이 민원의 원인이 된 000000의 건축 허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반려, 매매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반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적인 결정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상급기관 감사 결과와 같이 피신청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허가하면서 분양공고 및 분양과정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아쉽다할 것임.
- ▶ 피신청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5.18. 통일동산지구단위계획을 변경(노인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 공동주택 관련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부합되지 않아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법의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연금정책은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전이라도 공동주택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이에, 공동주택 관련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종결(기각)”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 **기타사항**

-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 신청 안내

◆ 피신청인 :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 민원내용

- ▶ 관급자재 조달물품 구입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 요청서를 받기 전에 관내업체와 사전 상담을 통해 조달물품의 식별번호, 규격, 사용목적에 맞는 조달물품을 제안 받아 제안 요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업무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00을 생산하는 업체로 피신청인이 발주한 공사 관급자재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구매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사항임.
- ▶ 피신청인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일반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예산, 가격, 품질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 없이 주문이 가능하여 가급적 관내업체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 ▶ 그러나, 수요물자가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납품 요구시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5인 이상의 계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하여야 함.
- ▶ 또한, 제안 요청을 하기 전에 관내 업체와 연락·상의·의논하여 제안 요청서를 제시하는 것은 관내 기업에 대한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종결(기각)”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축과)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00000를 건축주로 변경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00000가 토지소유권을 미확보하였고 부동산 개발업법 위배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

◆ 판단 및 결론

- ▶ 민원인은 신축 중인 이 민원 건축물에 관하여 000000를 건축주로 변경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행정 착오임으로 이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수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제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등]

- ▶ 따라서 이 민원 원인인 건축관계자 변경신청 당시 원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합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기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 또한, □□□□□이 000000가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신청한 당일 위 신청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하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므로, 해당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청에 대해 수리한 것은 적법함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결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에서 신청한 취하원 역시 적격이 없으므로 “심의종결(기각)”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 피신청인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1995년 건축한 농가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함. 이는 도시계획 세분화 당시부터 잘못되어 농림지역으로 된 것이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민원토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나 신청인은 구 건축물대장에 기재(자연녹지)된 내용을 근거로 1995년 농가주택 및 창고 건축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이후 농림지역으로 잘못 세분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
- ▶ 현재 민원 토지가 논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과는 도로와 단차 등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며, 마을과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및 창고 등의 건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기능을 하는 면적보다 대지로서 이용되는 농지가 더 많아 신청인의 주장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 그러나, 구거 부지가 민원 토지를 에워싸고 있고 용수로와 오·우수관로 역시 이 구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예전부터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였을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경기도 고시(1990-86, 1990.3.14.)에 따른 00도시기본계획도에서도 이 민원 토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외 지역 농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 고시된 1992.12.24.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확인되었음. 다만, 건축물대장 상 자연녹지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오기였을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므로, 민원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 불가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심의종결(기각)”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 피신청인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00리 000-00번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공사 진행 중 같은 리 ***-***번지를 추가하여 공장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 결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함.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계획관리지역인 00리 000-00번지에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민원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및 벌채하여 피신청인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기 허가받은 부지에 민원 토지를 추가하여 2차례에 걸쳐 공장신설승인(의제 산지전용)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음.
- ▶ 민원 토지는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의제일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은 없다는 판단임.
- ▶ 따라서, 신청인의 공장신설승인(의제 산지전용)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부동의’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민원은 ‘민원 토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임업용 보전산지의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임업용 보전산지를 전용할 만큼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의’ 하였다’는 내용으로 “심의종결(기각)”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 피신청인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 민원내용

- ▶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민원토지는 000이 곡물도정업과 곡물제분업을 목적으로 '16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거쳐 '17년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운영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년 임의경매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됨.
- ▶ LED 관련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신청인은 낙찰받은 공장용지 등을 LED 업종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식품업 및 제재업외의 타 업종 공장은 불가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토지를 당초 농지전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용도변경승인 신청할 것과 당초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면제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를 안내함
- ▶ 신청인은 민원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농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았음에도 농지전용의 당초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전 소유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경매 진행시 법원의 경매 서류 등에 '공장용지'로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의 공장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민원 토지의 용도를 경매관련 정보에서는 지목이 공장용지이며,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등재하고 있으므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등록 가능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 ▶ 또한 피신청인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현 소유자(경매로 인한 낙찰자 포함)에게 부과해 추징해야한다"는 안내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 됨.
- ▶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복구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부친이 45년간 경작해 온 민원토지에 대하여 상속이전 등기를 진행하던 중 민원 토지가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없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지적복구 자료 부존재로 지적복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 등기부에 있는 토지가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없는 토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적복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지적복구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민원토지의 공부를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부책)이 존재하나, 구 토지대장(카드) 및 구 지적도를 비롯해 현재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부존재함.
- ▶ 또한, 신청인의 부친이 45년간 경작했다는 민원토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별도의 지번과 지적공부가 있는 국유지 및 제3자의 사유지이며, 민원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하며, 관계 자료란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말한다.
- ▶ 그러므로 신청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 토지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직권으로 지적을 복구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또한, 민원 토지는 별도의 지번으로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토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적공부의 복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를 통해서나 가능하다는 판단임.

◆ **의결결과 : 심의종결(기각)**

마. 심의종결(각하)

심의종결
(각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요구

◆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설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도로구역 제척으로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제3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중임)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도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수허가자가 설치한 지장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토지는 지방도 ***호선 개설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부지 중 잔여지로 수용되었던 공유재산(경기도 소유)으로 피신청인은 000에게 5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음.
- ▶ 이후, 도로구역 변경으로 민원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며,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 LH에서 원소유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원소유자와 신청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소유자에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 신청인은 000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설치한 지장물 등에 대해 피신청인이 000에게 행정처분(원상복구)을 통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소유자가 환매협의 및 환매권 행사 시점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설정 및 지장물에 대한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원소유자와 신청인간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
- ▶ 또한,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지장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시행하기도 전에 원소유자에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19.11.1. 경기도 → 원소유자 → 신청인으로 이전 등기) 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및 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심의종결(각하)”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각하)

◆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민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1차부지에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인접한 2차부지에 추가 공사를 위한 변경허가를 진행중에 있었음.
- ▶ 신청인은 1차부지의 토목공사를 위해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이행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1차부지와 2차부지에 걸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구조물이 있던 곳이 웅덩이로 남자 재해예방 차원에서 되메우기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전공사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함
- ▶ 신청인은 기존의 건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철거하면서 폐업으로 이미 철거했어야 할 구조물을 철거한 것일 뿐 이번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과는 무관하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행정처분하는 피신청인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

◆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허가 토지와 변경허가를 신청한 추가 개발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폐업된 구조물을 철거한 후 무단으로 50cm이상의 성토 및 정지작업 등을 실시하였음
-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인은 이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권한은 허가권자인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 또한,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전공사에 대하여 신청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확인되었음
- ▶ 따라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고 각하 함

◆ 의결결과 : 심의종결(각하)

◆ 피신청인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 신청취지

- ▶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소 신고관련 2020. 4. 1. 공사계획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20. 4. 8. 작업에 착수하여 2020. 4. 9.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허가 파주시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시공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 허가서류 접수 시 접수증에 처리완료 예정일이 2020. 4. 1.로 되어있어 일주일이나 지나서 공사착공을 한 사항이며, 신고서류 접수 시 설계자료를 충분히 첨부 하였음에도 공사완료 후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시공업체에게 가혹한 처분이니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임.

◆ 판단 및 결론

- ▶ 조사 진행 중 신청인이 회사의 사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함.

◆ 의결결과 : 취하(조사중지)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	팩스	김00	·하이마트 물류창고에서 배송 중 냉장고 파손에 대한 처벌 요구	·해당 업체는 위원회의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조사·처리가 어려우며, 해당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2	이메일	신00	·송학길 불법주차 단속 요청	·해당 민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파주경찰서 소관사무로 해당 민원을 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안내	
3	이메일	임00	·쓰레기 청소 및 도로 파손 복구 요청	·해당 민원 구간은 고양시 관할 지역으로 관할기관인 고양시로 이첩하였음을 안내	
4	이메일	이00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강화 요구	·파주시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파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 단속 예정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할 계획임을 안내	
5	이메일	김00	·파주시 퍼스트가든 예식 관련 민원	·해당 업체는 위원회의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조사·처리가 어려우며, 해당 민원 내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6	이메일	김00	·00리 00번지 내 무단 점유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사항에 대한 원상 복구 및 도로 개설 요구와 기존 도로 폐쇄 가능 여부 문의	·해당 민원 토지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원상복구 및 도로개설 요구 민원은 국방부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	
7	팩스	조00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 보완 요구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규정상 주민등록 주소가 파주로 되어있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8	이메일	공00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 보완 요구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규정상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규정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9	이메일	정00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 보완 요구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규정상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귀하의 민원내용의 경우 변호사 자문결과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지급대상임을 안내	
10	이메일	설00	· 금릉 로데오 거리 내 상가 앞 어린이 놀이기구 조치 요구	· 해당 놀이기구는 관광진흥법상 유기사설기구이므로 해당업소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	
11	이메일	문00	· 파주시 경의로 000 주변 공사장 먼지 피해조치 요구	· 해당 공사현장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장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을 안내	
12	팩스	진00	· 물품 공급 후 받지 못한 대금 해결 요구	· 해당 기업은 위원회의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조사·처리가 어려우며, 해당 민원내용은 민사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	
13	이메일	이00	· 하천 제방길(도로) 확장 요구	· 00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문의결과, 하천 제방길 확장은 불가함을 답변 받았음을 안내	
14	이메일	기00	· 장애인 불법주차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해당 민원은 의견진술 결과 부결된 사항으로 본 과태료에 불복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5	이메일	김00	· 공시지가 변동(하락) 사유 문의	·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동일 용도지역 내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하게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음을 안내	
16	이메일	김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 문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당시 전반적인 토지이용현황 및 道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사항임을 안내	
17	이메일	김00	· 하지석동 체육공원 소음 해결 요구	· 시설관리자를 통해 체육활동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소음 측정을 통해 다각적인 소음 저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안내	
18	이메일	이00	· 신호등 좌회전 신호 설치 요청	· 해당 민원은 파주경찰서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기에, 파주경찰서에 민원신청을 하도록 안내	
19	팩스	신00	· 인근 주택공사로 인한 피해 해결 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건축주로부터 제출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예정	
20	이메일	이00	·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 제안 반례에 따른 시장님 면담 요구	· 귀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00동 0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제안은 제출 서류가 관련 법령 및 지침상 불부합하여 반려처리 되었음을 안내	
21	팩스	김00	· 문화로 보도블럭 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 피해사항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 요청 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을 안내	
22	이메일	사00	· 편의점 불법 야외 테이블 신고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치물을 제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	
23	방문	이00 0(주)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요구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개발 부담금 납부 연기 요구는 불가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24	방문	박00	· 도로 적재물 처리 요구	· 도로에 무단 적치한 물건을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하여 제거하였음을 안내	
25	방문	김00	· 선유4리 마을 주거환경 개선 요구	·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과 정부지원사업 등을 매칭시켜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임을 안내	
26	이메일	김00	· 도로내 불법주차 및 테이블 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및 불량배들의 출입 검문에 따른 불안감 해소 요청	· 해당 도로는 소유대지권이 설정된 사유지이며, 상기 행위가 사인간 권리관계로 인한 유치권 행사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직무관할기관에 해당 하지 않음을 안내	
27	이메일	한00	· 국유지 불법점유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국유지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였음을 안내	
28	이메일	정00	· 임대인의 세금체납에 따른 부적절한 압류 처분에 대한 처리 요구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압류처분이기 에 압류해제는 불가함을 안내	
29	이메일	유00	·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철회 요구	· 검토 후 답변 예정임을 안내	
30	이메일	이00	· 녹지점용료 부과업무 실태조사 요청	· 민원 내용에 해당하는 녹지점용료는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31	우편	익명	· 00초등학교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온라인 학습에 대한 민원제기	· 해당 민원은 파주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로 위원회의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조사·처리가 어려움을 안내	
32	이메일	안00	· 00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조치 요청	· 해당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피해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예정임을 안내	
33	방문	익명	· 편의점 심야 소음 및 야외용 테이블 제거 요청 민원	· 야외용 테이블을 설치한 위치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서 강제 제거를 할 수 없었으나,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에 테이블 제거 협조 요청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34	이메일	임00	· 빌라옆 교회 주차장 꺼짐현상으로 인한 피해 조치 요구	· 교회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통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35	이메일	송00	· 마당 앞 물잠김으로 인한 우수관 추가 설치 요청	· 현장확인결과 우수관로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하도록 안내	
36	이메일	강00	· 문산 여우고개 부근 불편사항 조치 요청	· 현장확인 후 답변 예정임을 안내	
37	팩스	김00	· 파주시 고용노동복지센터 집합교육 실시 조치 요구	· 해당 민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업무로 위원회의 직무관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조사·처리가 어려우며, 해당 민원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38	이메일	임00	· 빌라옆 교회 주차장 꺼짐현상으로 인한 피해 재차 조치 요구	· 교회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통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39	이메일	유00	· 옆집 주차장 파손된 옹벽 및 폐건자재 조치 요청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거주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안전조치 이행토록 하였음을 안내	
40	이메일	파주 0000	·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모임 연기 조치 요청	· 해당 모임은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안내	
41	이메일	(주)코000	· 현황도로 폐쇄 조치 요구 민원	·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 위원회의 직무관할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통방해관련 사법기관에 신고가능 함을 안내	
42	이메일	정00	·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당한 사항 조치 요구	· 해당 민원은 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43	이메일	(주)에000	· 파주세무서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고충 조치 요청	· 파주세무서는 위원회 직무관할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주세무서에 민원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44	이메일	임00	·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에 대한 시공사의 as의무 불이행 조치 요청	· 해당 민원에 대해 아파트 관리주체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음을 안내	
45	이메일	(주)코000	· 도로재정비 요청	· 해당 도로는 사유지로 위 도로의 정비는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신청가능 함을 안내	
46	우편	천00	· 사유재산 무단공작물 설치로 인한 공사 중지 및 철거 요청 민원	· 해당 부지는 공사완료 된 부지로 공사중지는 불가능하며, 매설된 배수관은 배수처리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수 허가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안내	
47	이메일	강00	· 마장호수 주차 불편 관련 민원	· 주차요원의 불친절로 인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주차요원들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안내	
48	이메일	정00	·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처분 관련 민원	·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완료조치 하였기에, 해당 민원내용이 종결되었음을 안내	
49	팩스	이00	· 옆집 대형수목으로 인한 위험 조치 요청	· 현장 확인 후 해당 수목에 대한 제거를 안전총괄과에 요청하였음을 안내	
50	이메일	선00	· 공장진입로로 사용 중인 농지의 원상복구 요청	·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51	이메일	최00	·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 조치 요청	· 해당 거리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하나,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안내	
52	팩스	김00	· 건축 인허가 남발 원인 조사 요청	· 해당 민원은 위원회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53	팩스	색000(주)	·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입찰 관련 민원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하여 민원처리를 하겠음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54	이메일	이00	· 임진각 공원에서 의 연날리기에 대한 안전 조치 요청	· 해당 민원은 경기도관광공사 소관업무로 위원회 직무 관할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도관광공사에 민원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55	이메일	췌한0 000	· 한반도 생태평화 중 합관광센터 건립공사 관련 미수채권발생 해 결 요청	· 파주시와의 직접 계약한 사항이 아니므로 시에서 지급은 불가하며, 문제를 발생한 업 체는 건설업 담당 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의 뢰하였음을 안내	
56	이메일	문00	· 버스 배차간격을 줄 여달라는 요청	· 현재는 버스증차가 어려우며, 향후 이용승 객 및 교통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민원 에 대해 검토하겠음을 안내	
57	이메일	이00	· 옆집 건축물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 해당민원 건축주에게 측량 후 그 결과에 따 라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민 원 지역은 일조권 적용 지역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행정조치가 어려움을 안내	
58	이메일	이00	· 동문천 하천제방 공사 관련 피해 조치 요청	· 현장 방문하여 건설차량 출차 시 세륜후 출 차 및 살수차 상시 대기하여 먼지 제거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 획임을 안내	
59	팩스	이00	· 각 업소 및 상점의 불 법체온측정기 관련 민원	· 담당부서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점검 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	
60	팩스	박00	· 상수도 설치 요청	·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급수공사 대 행업체를 통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함 을 안내	
61	이메일	류00	· 000아파트 규정을 어긴 시공에 대한 조 치 요청 민원	·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 후 별 도통보 예정임을 안내	
62	이메일	한00	· 교회십자가로 인한 빛 공해 조치 요청	· 현장 확인 후 해당 교회에 야간 소등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음을 안내	
63	이메일	김00	· 00리 이장 임명 보류 요청	· 해당 마을 선출된 이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 에 따라 민원 종결 안내	



IV

부 록

1.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4.20 조례 제1421호

(일부개정) 2019.05.10 조례 제14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행정기관 등”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3조(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파주시시

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옴부즈만 회의로 대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고충민원 처리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옴부즈만 활동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
 -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2.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개정 2019.5.10)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중에서 대표옴부즈만을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합의권고
2. 제22조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3. 제23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제27조에 따른 감사의뢰
5. 종전 의결례의 변경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직무관할기관) 옴부즈만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되는 옴부즈만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의 수(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12조의2(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9.5.10)

-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옴부즈만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를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행정기관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

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시장은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03.08 규칙 제6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 소집)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3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5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7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옴부즈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사결과보고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결정의 통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7조에 따라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 결과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

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활동 지원부서의 장이 대리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9조(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사항을 파주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고와 함께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31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2조(문서 및 관인) 위원회는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진다.

제33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처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편 집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전 화 031-940-4464~4466

팩 스 031-940-4089

디자인 경기애드 (031-946-197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